##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691

발의연월일: 2025. 6. 10.

발 의 자 : 허 영・박지원・김병기

박 정·장철민·김영환

김태선 • 위성곤 • 전재수

임호선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는 창군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혁혁한 전공을 세워왔으나 유신 독재 정권 시절인 1973년 10월 10일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현행법(당시 명칭은 「군법회의법」)에서도 해병대와 관련한 군사법제도 규정들이 삭제된 바 있음.

그런데 그 뒤 실제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해병대는 변변한 장비도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합참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차별적 대우를 받아 온 것이 현실이며 심지어 엄연히 해병대를 지원하여 복무한 뒤 전역한 전역자들조차 육해공군 3군 체제라는 한계 때문에 병적에 해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등의 부당함을 겪어 왔던 것으로, 이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병대 위상 강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옴.

이에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기 위한 여러 조치의 일환으로, 해병대의 사기를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의안번호 제10689호) 및 「국군조직법」(의안번호 제10688호), 「군인사법」(의안번호 제10687호), 「군수품관리법」(의안번호 제106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공군"을 "공군·해병대"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공군이"를 "공군·해병대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공군"을 "공군·해병대"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참모총장"을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 중 "참모차장"을 "참모차장 및 해병대부사령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공군본부 등"을 "공군본부·해병대사령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공군"을 "공군·해병대"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공군"을 "공군·해병대"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비율로"를 "비율로, 해병대는 해군 또는 공군의 100분의 50의 비율로"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수로"를 "수로, 해병대는 해군 또는 공군의 100분의 50의 비율로"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본이념) 국방개혁은 다음	제2조(기본이념)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	
를 육성하여 국가안보를 튼튼	
히 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에 기	
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	
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미래전의 양상을 고려한 합	2
동참모본부의 기능 강화 및	
육군·해군· <u>공군</u> 의 균형있는	<u>공군·해병대</u>
발전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군구조"라 함은 국방 및 군	3
사임무 수행에 관련되는 전반	
적인 군사력의 조직 및 구성	
관계로서 육군·해군· <u>공군이</u>	<u>공군·</u>
상호 관련되는 체계를 말한	<u>해병대가</u>
다.	<u>.</u>
4. • 5. (생략)	4.•5. (현행과 같음)
6. "합동성"이라 함은 첨단 과	6

학기술이 동원되는 미래전쟁의 양상에 따라 총체적인 전투력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육군·해군·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19조(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의 장교 보직) ① · ② (생략)
  - ③ 각군 <u>참모총장</u>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장교 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합동직 위에 근무할 수 있는 합동특기 등의 전문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 제20조(참모총장 등에 대한 보직 추천)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 총장 또는 <u>참모차장</u>의 직위에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갖춘 장 교가 임명될 수 있도록 병과・ 특기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추천 또는 제청하여야 한다.
- 제23조(군구조의 개선) ① 국방 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

<u>공군·해</u>
병대
제19조(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의 장교 보직) ① · ② (현행
과 같음)
③ <u>참모총장(해병대사령</u>
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u>.</u>
제20조(참모총장 등에 대한 보직
추천)
참모차장 및 해병
대부사령관
제23조(군구조의 개선) ①
<u>3</u>

- · 공군본부 등 군 상부 조직은 문민기반 위에서 통합전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그 기능 및 조직을 개선·발전시 켜야 한다.
- ② (생략)
- ③ 합동참모의장은 합동작전능력 및 이와 관련된 합동군사교육체계 등을 개발・발전시키고, 합동작전 지원분야에 있어서 각군 참모총장과 원활한 협의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경우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합동작전 지원분야에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따른 육군・해군・<u>공군</u>의 기능및 합동성에 관하여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 ④ (생략)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① 저

- · ② (생 략)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비 병력은 각 군별로 최고의 전력 체계를 유지하고, 육군·해군· 공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하 여 합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군본부·해병대사령부 등
② (현행과 같음)
③
<u>공군·해병대</u>
④ (현행과 같음)
∥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3</u>
<u>군·해병대</u>

적정수준의 구성비율을 유지하 여야 한다.

#### ④·⑤(생략)

제29조(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 ① · ② (생 략)

③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공통직위는 해군 및 공군은 같은 비율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의 비율로 보하며, 대령이상의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는 각 군간 순환하여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생 략)

제30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 ① 장성급(將星級) 장교가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 지휘관은 해군 및 공군은 같은 수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3배수의 비율로 하여 순환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비율로, 해병대는 해군 또
는 공군의 100분의 50의 비율
<u>로</u>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
형편성) ①
<u>수로, 해</u>
병대는 해군 또는 공군의 100
<u>분의 50의 비율로</u>
② (현행과 같음)